

# 청구상담전문가 나눔자료(2026년 6월)

## □ 목적

-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업무 시 지역 기반의 위촉된 청구상담전문가로부터 적극적인 상담지원 등으로 원활한 업무수행 도모

## □ 상담 운영

- 2026년 위촉된 청구상담전문가 중 410명이 상담 하였고, 상담 건은 2026년 5월에 1,664건으로 전월('26년 4월) 대비 7.5%(134건) 감소
  - ※ 상담 건수: 2,467건('26.2월) → 1,811건('26.3월) → 1,798건('26.4월) → 1,664건('26.5월)
- 상담유형: 심사 7건(0.4%)<RFID 79건(4.7%)<청구 705건(42.4%)<기타 873건(52.5%)순  
'기타' 상담: 지정갱신, 장기요양 기관 평가 관련 상담 등

### < 2026년 5월 청구상담 운영 현황 >

'26. 5. 31. 기준(단위: 명, %, 건)

지역 본부	청구상담전문가		상담내용					활동상담자 1인당 상담건
	위촉	활동 (%)	계	청구	RFID	심사	기타	
<b>계</b>	<b>664</b>	<b>410</b> (61.7)	<b>1,664</b>	<b>705</b>	<b>79</b>	<b>7</b>	<b>873</b>	<b>4.1</b>
서울강원	127	75 (59.0)	336	136	11	0	189	4.5
부산울산경남	100	63 (63.0)	284	108	12	1	163	4.5
대구경북	100	62 (62.0)	244	100	17	2	125	3.9
광주전라제주	100	58 (58.0)	178	81	6	0	91	3.1
대전세종충청	100	62 (62.0)	239	96	17	4	122	3.9
인천경기	137	90 (65.7)	383	184	16	0	183	4.3

- 【첨부】** 1. 청구상담전문가의 역할 및 책임 1부.  
 2. 청구상담전문가 상담내용 전산등록 안내 1부.  
 3.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산정 및 급여비용 산정 개정 안내1부 끝



◆ 청구상담전문가의 역할 및 책임 ◆

- 청구상담전문가는 자원봉사(재능기부)형태의 활동을 원칙으로 하며,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준수 및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할 수 없음
- 청구상담전문가는 자신이 상담한 청구 관련 지식과 노하우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은 없으나 성실, 신의의 자세로 상담에 응하여야 함
  - 청구상담전문가가 제공한 정보의 채택여부 판단은 기관의 선택 사항임
- 상담은 유선 답변을 원칙으로 함
- 상담분야는 가급적 청구관련 업무로 한정하되, 청구 업무 외의 상담여부는 청구상담전문가의 재량임
  - 답변이 곤란한 사항은 공단에 문의하도록 안내
- 청구상담전문가는 신규개설기관 등 교육에 강사로 지원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음
- 공단 해촉 기준에 따라 해촉 될 수 있음
- 청구상담 관련 취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등을 외부로 누설(반출)하거나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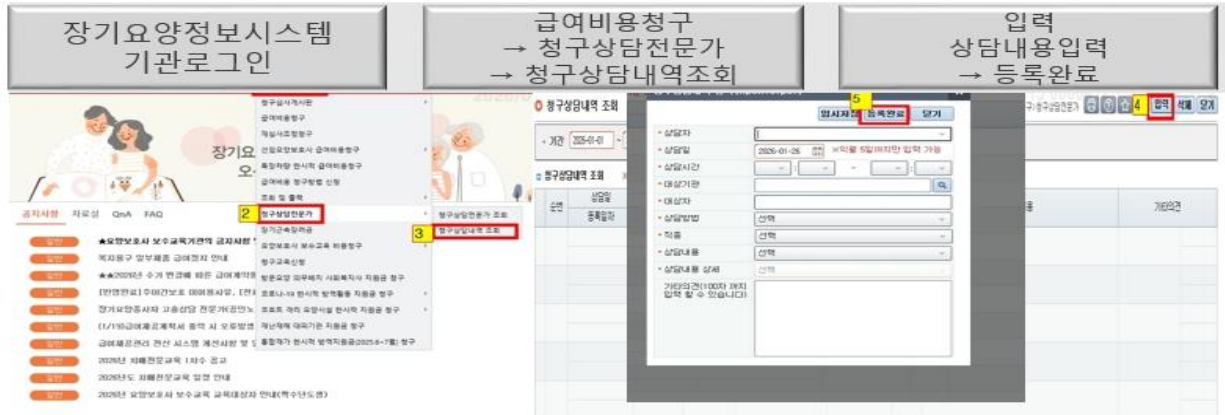
※ 장기요양 청구상담 고객센터: 1577-1000 > 0 > 4 > 2

※ 장기요양 청구상담 직통번호: [033-811-2002](tel:033-811-2002)



# 청구상담전문가 상담내용 전산등록 안내

□ 전산입력 경로



□ 상담내용 전산등록 주의사항

- 등록 화면의 모든 내용은 필수입력 값으로 반드시 등록
- 대상자 성명은 실명으로 등록
  - 상담 전에 대상자에게 실명을 밝혀야 상담이 가능함을 안내
  - **상담 전 개인정보제공 동의 여부 구두로 동의 필요**
  - 예시: 시설장(X), 사회복지사(X), 청구담당자(X), 김건강 시설장(X)
- 임시저장 후 반드시 등록완료 처리 필요
- 상담내용은 분류에 맞게 등록
  - 상담내용 분류: 청구(가감산 포함), RFID, 심사, 신규기관, 기타
- 상담 즉시 전산등록이 원칙
  - 즉시 등록 어려운 경우 다음 달 5일까지만 소급 등록 가능
  - ※ 기간이 지나면 입력 불가

## 「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 개정 안내

○「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」이 2026.6.11.자로 일부 개정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### 가. 주요 개정내용

- (제도개선) 서식 통합에 따른 내용 현행화 및 급여결정신청 기준 명확화 등
- (급여평가위원회) 관계자의 의견청취 등 업무절차 명확화
- (전문가자문회의)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 명칭 통일
- (급여제공기준) 복지용구 급여기준 명확화
- (기타) 행정서류 간소화에 따른 서식 통합 및 내용 보완 등

### 나. 자료게시: 2026.6.11.(목)

-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/ 알림·자료실 / 법령자료실

h-well 국민건강보험

민원서비스 ▾ 장기요양기관 ▾ **알림·자료실** ^ 제도안내 ▾

알림방	자료실	공시·공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공지사항</li> <li>· 지역본부소식</li> <li>· 보도자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서식자료실</li> <li><b>· 법령자료실</b></li> <li>· 전문자료실</li> <li>· 통계자료실</li> <li>· 장기요양보험용어사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공시송달</li> <li>·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 명단공표제도안내</li> <li>·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 명단공표</li> </ul>

Total 221 (1 / 23 page)

번호	제목	작성자	등록일	첨부
공지	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고시	관리자	2023-06-02	
공지	노인장기요양보험법, 시행령, 시행규칙, 장기요양기관 재우·회계 규칙	관리자	2021-08-23	
221	「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 개정 안내	요양자원실	2026-06-15	
220	「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·지급업무 처리기준」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113(2026.5.14.)	요양심사실	2026-05-18	